

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

대체인력지원사업이란?

산재근로자 치료기간 중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,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**소규모사업장(20인 미만)의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 임금의 일부 지원**

어떤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?

산입재해 당시(해당 월말) 총근로자 수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로서, 아래의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.

- ◎ **산재근로자** '산재장해판정자 또는 요양승인기간이 2개월 이상인 산재근로자'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 유지
- ◎ **대체인력** 재해일 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

※ 제외대상 : (사업장) 산재보험료 체납(체납보험료 완납시 청구 가능) · 타법령에 의한 지원금 이중 수급 · 청구기간 내 다른 근로자 고용 조정(경영상의 필요 등), (대체인력) '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' 미가입자 · 건설일용직 / 불법외국인 근로자 등

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가?

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,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
- ◎ **지원기간** 산재치료기간 중 대체인력 고용 기간
| 지원시작일 대체인력 채용일(2015년 이전 채용자는 2016.1.1.부터 지원)
| 지원종료일 대체인력 퇴직일 또는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전날 중 빠른 날(단, 요양종결일 이후 원직장복귀한 경우는 14일까지만 인정)
- ◎ **지원금액** **대체인력 임금의 50% 범위내(월 60만원 이내, 최대 6개월)**

지원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가?

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날 이후, 청구 가능 합니다.

사업장 또는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(지사)로 지원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*를 접수하시면 자격심사 후 지급 결정

*구비서류 : 청구서, (산재근로자, 대체인력) 임금지급 확인서류 등

☎ 대체인력지원금 청구시, 🌐 **근로복지공단(www.kcomwel.or.kr)** 대표전화(1588-0075) 또는 해당 지역본부 (지사) **재활보상부**로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(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) 대체인력 채용을 원하는 사업주에게 무료로 구직자 취업알선을 해 드립니다.

수도권 전체	1577-0221	대구/경북지역	053-565-2894
대전/세종/충청지역	042-826-2130	부산/경남지역	051-900-2893
광주/호남/제주지역	062-369-9436	강원/원주지역	033-745-6735

※ 【수도권】 대체인력뱅크 - (주)커리어넷, 【지방권】 대체인력뱅크 - (주)스카우트 🌐 홈페이지(www.대체인력뱅크.com)